

이천시시청 및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

'96. 4. 23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13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4월 19일 내부위원회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내부위원회(1996. 4. 22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- 가. 제안이유 : 면·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를 폐지하고, 대월면사무소를 초지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 : 대월면 소재지를 단월리 101-2번지에서 초지리 432-4번지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면·동간 명칭변경 및 구역변경 조정으로 대월면 초지출장소를 폐지하고 현 면사무소 소재인 대월면 단월리 101-2번지에서 대월면 초지리 432-4번지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